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46
------------	------

2016년 6월 20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6. 6. 1 이승로·김동윤 의원 공동 발의(찬성자 12명)
(2016. 6. 2 회부)

2. 제안이유

- 경관조명 점등 및 소등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경관조명 및 미디어파사드 운영시간(점·소등 및 영상연출시간)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하도록 함(안 제24조).
- 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좋은빛위원회의 심의 대상 조명기구 정비(별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첫째, 경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장식조명의 점·소등 시간을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대상 조명기구를 상위법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승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6년 6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먼저, 장식조명¹⁾의 점·소등 시간과 관련하여²⁾ 현행 규정에서는 점등시간은 일몰 30분 후, 소등시간은 23시 이내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관광특구와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동안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등 및 소등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이 조례에서는 조명을 공간조명, 장식조명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점·소등시간을 정하고 있음.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점등시간은 일몰 15분 후, 소등시간은 일출 15분전이나, 안개, 강우 등 기상상황의 변화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조례 제24조제1항).

장식조명이란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조명을 말함.

- 서울시 공간 및 장식조명 현황

구 분	계	공 간 조 명			장식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조명	
수량	547,762	261,892	228,686	32,572	24,612
비율(%)	100.0	47.8	41.7	6.0	4.5

- 2) 장식조명 점·소등 시간을 조례에서 정한 목적은 에너지를 절감하고 정온한 밤 환경을 조성하여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함.

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에너지절약 지침(2011년)⁴⁾에 따라 12개 소만 점등하고 있는 한강교량의 경관조명을 스토리와 경관미가 있는 교량을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선정하여 점등 교량을 18개소로 확대⁵⁾(붙임1, 「한강교량 점등 운영계획」 참조)하는 한편, 기존의 경관조명을 개선하여 점등 및 소등시간을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서울의 이미지 제고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임⁶⁾).

- 인천국제공항의 24시간 운영에 따른 내·외국인의 야간 입출입, 하계 시민들의 야외 야간활동 및 한강둔치 이용객 증가 등으로 한강교량, 건축물 등에 경관조명의 설치 확대 및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서울시민 및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서울의 매력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경관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설치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둘째,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대상 조명기구 변경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추가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주유시설 등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는 없다 사료됨.

4)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소등. 다만, 국제행사 개최, 관광진흥 등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등의 내용(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 2011.3.2.)이나, 2011.12.5.일 폐지됨(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

5) 한강교량 점등교량을 추가 확대할 경우 연평균 추가 소요비용은 750만원 정도로 예상됨.

6) 점등시간은 실제 심야시간대 이용객을 감안하여 스토리텔링 교량에 한해 하절기 24시까지 운영할 계획임(한강교량 경관조명 점등확대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49호, 도로시설과-2689, 2016.3.7.).

【붙임 1】 한강교량 점등 운영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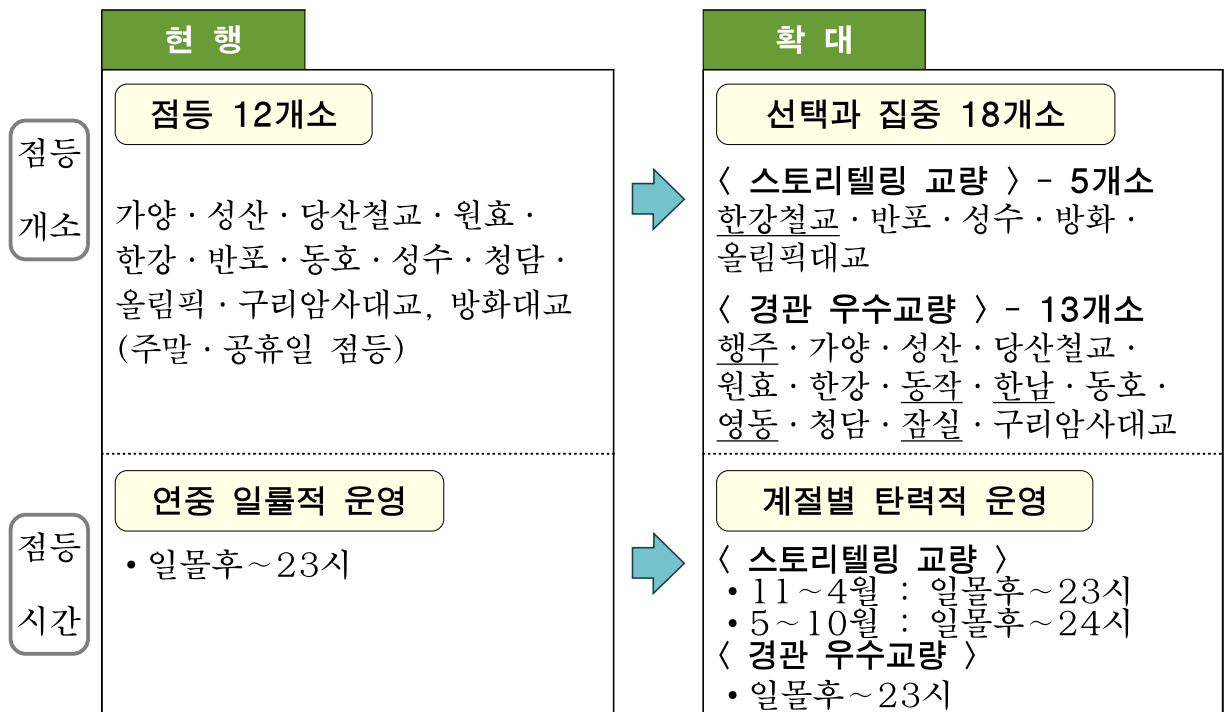
○ 한강교량 장식조명 현황

- 한강교량 29개소 중 장식조명 27개소 설치(점등 12, 소등 15)
- 소등경위 : 지식경제부 에너지사용 제한공고에 따라 점등 축소('11.3.9.)

○ 조례개정에 따른 한강교량 장식조명 연장 운영 계획

겨울철(11~4월)	여름철(5~10월)	비고
일몰 후 ~ 23시까지	일몰 후 ~ <u>24시까지</u>	여름철에 소등시간을 23시에서 24시로 연장

※ 점등개소는 12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고, 스토리 및 경관미가 있는 5개소에 대해서만 여름철에 23시에서 24시까지 확대 운영



※ 자료: 한강교량 경관조명 점등확대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9호, 도로시설과-2689, 2016.3.7.)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2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제23조제1항 중 “제12조에 따른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중 “국내외 행사, 빛축제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은”을 “국내외 행사 또는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m^2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명기구 를 신설, 개량,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법 제15조의 조명기구의 설치·관 리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6조제1 항의 빛방사허용기준 및 제12조 의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하 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22조(조명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제21조의 야간경관가이드라 인-----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좋은빛 형성 관리 등) ①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관 리하고자 하는 자는 좋은빛 형 성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조명 기구의 설치·관리기준과 법 시 행규칙 제6조제1항의 빛방사허 용기준 및 제12조에 따른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23조(좋은빛 형성 관리 등) ① ----- ----- ----- ----- ----- ----- ----- 제21조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 -----.</p>
<p>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② (생략)</p>	<p>제24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별표]

현행		개정안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제13조제2항 관련)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제22조제2항 관련)	
구분	시설 규모	구분	시설 규모
1.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공공청사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u>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탁시설</u>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도로부속 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 주유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5. ~ 6. 삭제	
6. 미술작품	<u>「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 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작품,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대상</u>		
7.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 개량 등)	5.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 (신설, 개량 등)